

언론조정 및 중재 신청과 처리절차

언론중재위원회의 주요 업무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의 조정 및 중재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언론(방송,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인터넷신문)의 보도에 의해 피해를 입은 개인, 단체 등으로부터 조정신청 또는 중재신청을 접수하여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 등의 방법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 운영

언론중재위원회는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상담을 무료로 해드립니다.

상담센터는 언론피해와 관련된 법률문제 전반에 걸친 종합적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객 방문시 상근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해드리며, 인터넷과 전화를 이용한 하루 24시간 실시간 상담도 가능합니다.

또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사전예방을 위해 언론사, 대학, 기업, 각종 단체의 요청을 받아 '언론피해 구제 및 예방에 관한 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 정 권 고

언론중재위원회는 시정권고 소위원회를 통해 언론의 보도를 심의하여 해당 기사의 내용이 국가적 법익이나 사회적 법익 또는 타인의 법익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면 해당 언론사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닌 일반 국민들도 시정권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공정 선거기사 심의

언론중재위원회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라 선거일 전 12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20일)까지 위원회 내에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일 후 30일까지 운영합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공정치

못한 선거보도에 대해 사과문, 정정보도문, 경고문 게재 또는 주의, 경고 등의 결정을 내립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구성

전국 16개의 중재부, 중재부의 장은 현직법관

• 언론중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80명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울에는 사무처가 있습니다.

• 80명의 중재위원들은 각 시도별로 설치된 중재부에 소속되어 조정 및 중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5인 이내로 구성된 중재부는 서울에 6개, 부산·대구·광주·대전·수원·춘천·청주·전주·창원·제주에 각 1개씩 모두 16개 곳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중재부의 장은 현직 법관이 맡고 있습니다.

중재부의 관할 구역

• 조정 및 중재관할권은 조정 및 중재대상이 되는 언론사(방송,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인터

넷 신문 등)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곳을 관할하는 중재부에 속합니다.

조정과 중재

청구의 종류

▶ 정정보도청구

• 언론보도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이 진실하지 않아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피해자)이 언론사에 이를 진실에 부합되게 고쳐서 보도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 문제의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보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언론사의 고의, 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하지 않습니다.

• 피해자는 중재위원회의 절차에 상관없이 위 기간 내에 법원에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반론보도청구

•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언론사에 그 보도내용과 대립되는 자신의 주장을 보도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 문제의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보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언론사의 고의, 과실이나 위

법함을 요하지 않습니다.

• 피해자는 중재위원회의 절차에 상관없이 위 기간 내에 법원에 반론보도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추후보도청구

• 언론에 의해 범죄 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사람이 무죄판결 등을 받아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을 때, 해당 언론사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내용을 보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 추후보도청구는 사건이 무혐의 또는 무죄로 종결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무혐의나 무죄로 형사절차가 종결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보도당사자는 중재위원회의 절차와는 상관없이 위 기간 내에 법원에 추후보도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청구

•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해당 언론사에 자신의 피해에 대해 금전적 배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을 명시해야 합니다.

• 언론중재위원회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문제의 보도가 있

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보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 피해자는 중재위원회의 절차에 상관없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정신청 및 처리 절차

▶ 조 정

•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조정이란,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피해자)과 언론사 사이의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및 손해배상에 관한 분쟁을 제3자인 언론중재위원회가 객관적, 법률적 입장에서 개입, 당사자 사이의 이해와 화해를 이끌어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 조정신청은 피해자 또는 언론사가 할 수 있습니다.

• 조정신청 처리결과로는 합의, 조정결정, 조정불성립결정 등이 있습니다.

▶ 조정신청 방법

- 서면에 의한 신청

• 신청인은 신청서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유와 원하는 보도문 또

는 손해배상액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문제가 된 보도 본문(방송의 경우 녹음, 녹화물과 녹취록)을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신청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구술에 의한 조정신청

- 신청인은 담당직원의 면전에서 조정신청의 내용을 진술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은 담당 직원에게 신청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인적사항, 조정 대상 표현물의 내용, 보도일 및 인지일,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유, 원하는 보도문, 손해배상액, 작성일 등을 진술하여 담당직원이 조정신청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조서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인 및 담당 직원은 조정신청조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은 조정대상표현물과 기타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우편 등에 의한 조정신청

- 신청인은 중재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조정신청서의 내용을 입력하거나 중재위원회가 설치한 접수 전용 전자우편

함으로 조정신청서 파일을 송부하여야 합니다.

- 중재부장은 신청인에게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신청인은 즉시 이를 중재위원회 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은 조정대상표현물과 기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조정 신청인, 대상 매체, 기간 등

- 조정 신청인

-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누구나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은 물론 일반단체나 회사, 지방자치단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 본인이 아닌 대리인(신청인이 미성년자일 경우 친권자)이 조정신청을 할 때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 조정 대상 매체

- 모기업이 국내에 있는 방송, 정기간행물(신문, 잡지), 뉴스통신, 인터넷 신문을 대상으로 합니다.

- 신청기간

- 보도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6개월이

지난 보도에 대해서는 조정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언론사에 직접 반론보도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청구한 경우에는 언론사와 협의가 불성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 추후보도청구는 사건이 무혐의 또는 무죄로 종결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무혐의나 무죄로 형사절차가 종결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조정처리절차

- 조정신청이 접수되면, 중재부는 조정기일을 정해 신청인과 언론사에 출석요구서를 보냅니다.

-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며, 피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취지에 따라 합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중재부는 조정기일에 양쪽의 진술을 듣고 합의가 되도록 적극 조정합니다.

- 조정기일에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지 못할 때, 조정대리허가신청서와 위임장을 제출하여 중재부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출석시킬 수도 있습니다. 단, 신

청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또는 소속 직원인 경우에는 대리인이 신청인과의 신분관계 및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하거나 신청인이 중재부에 출석하여 대리인을 선임하였음을 확인하면, 위임장만 제출하면 됩니다.

• 조정은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다만, 사건의 이해관계자는 중재부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습니다.

• 조정은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다만, 중재부가 직권으로 조정결정을 내릴 때에는 21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 조정처리결과

• 합의 : 피해자와 언론사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가 나가기 되며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언론사가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신청인은 법원에 합의이행을 강제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조정결정 :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재부는 당사자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직권으로 조정 결정을 내립니다. 조정결정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조정결정

에 대해 당사자가 중재부에 이의신청을 하면 결정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이의신청은 조정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중재부에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며 피해자를 원고로 언론사를 피고로 합니다.

• 조정불성립 결정 : 중재부는 당사자 간 합의 불능 등 조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정불성립 결정을 내립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중재신청 및 처리 절차

▶ 중 재

• 중재위원회를 통한 중재란,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언론사가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및 손해배상에 관한 분쟁을 언론중재위원회의 중구적 결정에 따라 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 중재신청 방법

- 중재합의

•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언론사가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 손해배상의 분쟁에 관하여 중재부의

중구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해야 합니다.

• 중재신청인은 중재합의를 입증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은 신청서에 성명·주소·전화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유와 원하는 보도문 또는 손해배상액을 명시하여야 합니다(언론중재위원회 소정 양식).

• 문제가 된 보도본문(방송의 경우 녹음, 녹화물과 녹취록)을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신청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중재신청인, 대상 매체, 기간 등

- 중재신청인

•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누구나 중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은 물론, 일반단체나 회사, 지방자치단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 본인이 아닌 대리인(신청인이 미성년자일 경우 친권자)이 중재신청을 할 때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 중재대상매체

• 모기업이 국내에 있는 방송·정기간행물(신문, 잡지)·뉴스통신·인터넷 신문을 대상으로 합니다.

- 중재신청기간

• 보도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6개월이 지난 보도에 대해서는 중재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추후보도청구는 사건이 무혐의 또는 무죄로 종결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무혐의나 무죄로 형사절차가 종결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중재신청 처리절차

• 중재신청이 접수되면, 중재부는 중재기일을 정해 신청인과 언론사에 출석요구서를 보냅니다.

• 신청인은 중재신청시 언론사와 피해자 간의 중재합의(중재결정에 따르기로 하는 언론사와 피해자 간의 합의)를 입증하는 서면(예 : 합의서)을 첨부해야 합니다.

• 중재절차는 신청인이 중재합의서를 첨부한 중재신청서를 중재부에 제출한 날로부터 개시됩니다.

• 중재기일에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지 못할 때, 중재대리허가

신청서와 위임장을 제출하여 중재부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출석시킬 수도 있습니다. 단, 대리인이 신청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또는 소속 직원인 경우에는 신청인과의 신분관계 및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하거나 신청인이 중재부에 출석하여 대리인을 선임하였음을 확인하면, 위임장만 제출하면 됩니다.

• 중재신청인은 중재결정에 이르기까지 중재신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중재절차 중에 화해를 하는 경우에 당사자가 요구하면 중재부는 합의된 화해의 내용을 결정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 중재신청은 조정절차 계속 중에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정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 중재는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다만, 사건의 이해관계자는 중재부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습니다.

• 중재절차는 종국결정 또는 당사자들이 중재절차의 종료에 합의하여 중재부가 종료결정을 한 경우 종료됩니다.

• 중재를 신청한 당사자의 비협조로 중재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기대할 수 없다고 중재부가 판단하거나 당사자 쌍방이 주장 및 입증을 태만히 하여 중재절

차의 계속적 진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심리절차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 쌍방이 정당하게 통지 또는 고지되었는데도 불구하고 2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여도 심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재부는 중재절차의 종료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 중재처리 결과

• 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중재부가 중재결정을 내리면 언론사는 결정된 내용대로 정정보도문, 반론보도문, 추후보도문을 방송 또는 게재하고,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언론사가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신청인은 법원에 합의이행을 강제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 정 권 고

언론보도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법익 침해사항 심의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언론의 보도내용에 의한 개인적·사회적·국가적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언론

사에 서면으로 그 시정을 권고합니다.

- 개인적 법익으로는 사생활 보호, 명예훼손 금지, 형사사건 피의자 및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해자·신고자 등에 대한 신원공개 금지, 성폭력피해자 보호 등이 있습니다.
- 사회적 법익으로는 범죄사건에 대한 필요 이상의 설명, 성과 관련된 선정적 묘사, 자살

보도에 대한 상세묘사, 마약에 대한 상세보도 금지 등이 있습니다.

- 국가적 법익으로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침해하는 내용의 보도, 국가기밀누설의 금지 등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시정권고 신청 가능

▶ 자체심의 이외에 피해자뿐

만 아니라 해당 보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도 언론 보도가 시정권고심의기준에서 정한 법익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시정권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사건은 시정권고소위원회 심의·의결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 시정권고는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데 그치며 강제력은 없습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 행 : 2005. 7. 28

제1조 (목적) 이 영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고충처리인에 관한 사항의 공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언론사가 고충처리인의 자격 및 그의 활동사항 등을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자사(自社) 발행 정기간행물에 게재하거나 자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3조 (사임한 중재위원의 위촉 등)

-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의 중재위원이 사임하거나 당연 퇴직할 때에는 사임 또는 당연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 ②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4조 (중재위원회에 대한 수당 등) 법 제7조제10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위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중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실비보상을 받는다.

제5조 (제척·기피신청의 방법 등)

- ① 법 제10조제2항·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위원 또는 중재절차에 관여하는 직원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중재위원이 소속된 중재부 또는 당해 사건 관할 중재부에 서면으로 신

청하거나 조정기일 또는 중재기일에 출석하여 구술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하는 때에는 제척 또는 기피신청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 (제척·기피신청의 각하 등)

①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방식에 위반되거나 조정절차 등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중재부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한다.

②제척 또는 기피신청된 중재위원 또는 중재절차에 관여하는 직원은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7조 (조정·중재절차 등의 중지)

①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척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중재위원이 속한 중재부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조정절차 또는 중재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②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 제척·기피신청을 한 날부터 그 결정에 이르기까지 소요된 기간은 법 제19조제2항 및 법 제22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조정처리기

간 및 직권조정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조 (예산 등의 협의) 중재위원회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처의 예산 및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국고 지원이 따르는 예산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 (보도물의 공개) ①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자는 법 제1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정정보도의 청구를 위하여 방송보도 및 방송프로그램,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 보도의 원본 또는 사본의 열람 또는 복사를 해당 언론사에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언론사는 피해를 입은 자가 피해사실과 관계 없는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는 등 이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언론사는 복사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으며, 그 비용의 결정기준을 당해 언론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수용여부의 통지방법) 언

론사의 대표자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정보도청구에 대한 수용여부를 통지하는 때에는 전자우편 또는 국내 특급우편 등의 신속한 방법에 의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협의문의 내용)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보도의 내용·크기 등에 관한 협의에는 공표할 정정보도문의 내용·크기 외에 정정보도의 회수와 정정보도문의 위치 또는 발송순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 (전자우편 등에 의한 조정신청)

①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중재위원회의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조정신청서의 내용을 입력하거나 중재위원회가 설치한 접수 전용 전자우편함으로 조정신청서 파일을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 조정신청의 접수일은 중재위원회의 컴퓨터 등에 접수된 날로 한다.

③중재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을 신청한 자에게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 (협의 불성립) 법 제18조제3항에서 “피해자와 언론사간의 협의가 불성립된 날”이라 함은 언론사가 피해자의 청구를 거부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기재한 문서를 피해자가 수령한 날을 말한다.

제14조 (중재의 개시)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절차는 신청인이 중재합의를 입증하는 서면을 첨부한 중재신청서를 중재부에 제출한 날부터 개시된다.

제15조 (중재신청의 취하) ①중재신청인은 중재결정에 이르기까지 중재신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취할 수 있다.

②중재신청인이 중재신청을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사실이 기재된 서면을 중재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시정권고의 방법) 중재위원회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권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언론사의 명칭 및 언론사의 대표자의 이름
2.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언

론보도의 프로그램명·제목, 보도일시 및 지면(정기간행물의 경우에 한한다)

3. 시정권고의 이유

제17조 (시정권고소위원회) ①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재위원회에 시정권고소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중재위원회에서 선출하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시정권고소위원회는 월 1회 이상 개최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 (시정권고의 신청) ①법 제32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권고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언론보도가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서면, 구술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②시정권고의 신청을 서면으로 하는 신청인은 신청서에 신청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시정권고요구대상인 언론사명, 보도일자, 보도내용 및 시정권고를 구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 한다.

③시정권고의 신청을 구술로 하는 신청인은 중재사무소의 담당 직원에게 신청내용을 진술하고 담당 직원은 신청인의 신청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확인하게 한 다음에 당해 서류에 신청인 및 담당 직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④시정권고의 신청을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하는 신청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중재위원회의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신청내용을 입력하거나 중재위원회가 설치한 접수 전용 전자우편함으로 신청서 파일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19조 (시정권고에 대한 재심) ①법 제3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언론사는 중재위원회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서에는 재심청구인의 명칭과 재심을 구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중재위원회의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재심 청구내용을 입력하거나 중재위원회가 설치한 접수 전용 전자우편함으로

재심청구서 파일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20조 (시정권고의 방법·절차 등)
이 영에 정한 것 외에 시정권고의 세부적인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언론중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 (과태료 부과)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 제반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령의 수입금 징

수에 관한 절차에 따라 징수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시정권고소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정권고소위원회는 이 영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